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0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9,32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7. 설립되어 무역업, 타일 및 도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사로서, 2012. 2. 27. [redacted]공사와 사이에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물류시설용지 7,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729,293,980원으로 정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12. 4. 30.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4. 19. 및 같은 해 5. 18.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그 위에 사무실 및 기타 창고시설 2,647.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12. 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2. 30. 이 사건 건물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이하 위 가.항 기재 조항과 구분 없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역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redacted]광역시는 2016. 1. 4.부터 같은 해 2. 23.까지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일대 [redacted]터미널물류단지에 관하여 2016년도 기획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사업용이 아닌 원고의 자사 세라믹제품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01,602,840원(가산세포함)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71,749,420원(가산세포함)을 추징할 것임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7. [redacted]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나, [redacted]광역시장은 2016. 7. 8. 원고를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소정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05,998,250원(가산세 66,461,400원 포함)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73,324,190원(가산세 23,331,55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2. [redacted]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구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물류단지시설'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작업장,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의약품 도매창고 및 영업소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항은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물류단지의 개발 및 육성을 촉진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③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생산·조달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

1) 물류시설법 제2조는 2013. 7. 16. 한차례 개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구 물류시설법(2013. 7. 16. 법률 제11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문에 규정된 구 물류시설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별도의 구분 없이 통칭하여 '구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이므로 공급자로부터 타일을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원고 역시 물류사업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물류사업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수행한 사업이 물류사업이라면 거기에 사용된 부동산 역시 물류사업용에 해당하는 점, ⑤ 원고가 수입한 물품대금에는 창고보관료 및 하역료 등 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류사업에 관한 '유상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정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말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점, 피고조차도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감면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물류사업'에는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자가물류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정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사전적으로 '물류'는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을 줄인 말로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물(物)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생산된 상품을 수송·하역·보관·포장하는 과정과 유통가공 등의 물자유통 과정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설명되고, 물류업무의 수행 주체에 따라 화주기업이 자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가물류'와 화주기업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제3자물류'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구 물류정책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물류를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 일'이다.

이와 같은 물류 및 사업의 사전적 의미와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류사업'의 문언적 의미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 개념 자체에서 물류사업의 운영주체를 화물 소유자 아닌 제3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자가물류' 역시 물류사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또한 물류시설법은,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제2조 제6호),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하며(제2조 제7호),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고(제2조 제9호, 제50조 제1항),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제50조의2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물류단지를 분양받아 그곳에 물류창고 등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물류단지 및 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경·면제함으로써 '물류시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집단적으로 설치·육성되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그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자가물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의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자가물류업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물류시설법이 2011. 8. 4. 법률 제11018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5호의3으로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위 개정 법률에서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관한 등록,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제3장의2(물류창고업)를 신설하면서 함께 마련된 것으로, 위와 같은 물류창고업에 관한 일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의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나 이 사건 조항에 적용되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의 범위에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3)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제정이유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유통단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것이었다(법제처 발간 제정이유 중 해당 부분 참조). 그런데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유통사업'이라는 용어가 '물류사업'으로 개정[2]되었고, 그 후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등을 일괄 규정하기 위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이 신설되는 한편, 같은 날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과세면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제정이유와 그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이 물류단지 및 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물류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제3자물류와 자가물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류산업의 발전 및 촉진에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동일할

2)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자가물류업체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한편, 1995. 12. 6. 위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가 신설되어 1996. 1. 1. 시행될 당시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물류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1995. 12. 29. 법률 제5110호로 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비로소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 '물류사업'의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조항은 위와 같은 변경을 거치는 동안 제도의 목적 등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로서(제1조), '물류사업'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3자물류를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각 정의(제2조 제1항 제2, 10호)하면서,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제5조)하고 있다. 또한, 구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1항, 제2항)함으로써 자가물류 역시 물류의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물류를 하는 기업이 제3자물류로 물류방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제3자물류 방식에 의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구 물류정책기본법의 제정이유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물류정책기본법은 자가물류 방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물류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제3자물류와 같이 독자성·전문성과 경쟁력이 있는 물류방식을 염두에 두고서 물류사업의 통상적 내지 문언적 의미보다 축소된 유상성을 전제로 한 물류사업의 정의규정을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명시적인 준용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입법 취지 및 제정이유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조항의 '물류사업'에 구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정의규정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조항과 달리, 도시철도법 제2조 제6호의2 바목,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이나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사업을 정의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10 제1항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화주기업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자회사물류(이 경우 화주와 물류기업 사이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 7호의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구 물류정책기본법상 제3자물류에는 포섭되지 않는다)의 경우에도 그 물류활동의 유상성만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물류사업에 포섭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구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자회사물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반면 자가물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자회사물류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자가물류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원고가 구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사업부서 중 물류사업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제3자물류방식에 의한 물류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물류사업자로서의 지위 내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구 물류정책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률로 정한다.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50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시설 등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조례·「농업·농촌기본법」·「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끝-